

이화의학교육센터 규정

2022. 2. 25. 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의학교육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소속) 센터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에 둔다.

제3조(사업)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의학교육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연구, 교육, 개발, 자문에 관한 사항
2. 기초/임상을 포함한 모든 교육과정에 대한 지원과 교수법, 학습방법, 학습상담, 학생 역량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과 운영
3. 국내·외 의학교육 관련 학술 활동과 의학교육 지속발전 방안 수립 및 운영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제4조(센터장)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의과대학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센터장은 의과대학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, 감독한다.

③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조직 및 기능) ① 센터에는 교수학습지원실, 임상실기교육실, 미래혁신의학교육실, 의학 교육성과관리실을 둔다.

② 교수학습지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통합교육과정 학습 지원(PBL, TBL 등)
2. 실기시험 지원(OSCE, CPX 등)
3. 비대면(온라인)학습/강의녹화 지원
4. 의학교육 관련 위원회 업무 지원
5. 교육과정 개발 관련 예산 관리
6. 지필시험 채점(OMR)
7. 교수법 프로그램 지원
8. 의학교육 워크숍 및 행사 개최
9. 강의평가 시행
10. E-test 운영(SIMPREC/UBT/CBT 시행 및 관리)
11. LMS(사이버캠퍼스) 개발 및 운영
12. E-Portfolio 운영 및 관리

③ 임상실기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학생 술기 교육 및 평가
2. 임상실습 지원

3. 실습 기자재 관리

④ 미래혁신의학교육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의학교육 관련 정책 연구 및 평가
2. 미래의학 교육과정 개발 및 평가

⑤ 의학교육성과관리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의학교육 CQI 관리
2. 의학교육의 질 관리 모델 구축 및 확산
3. 의학교육 효과성 검증
4. 교수역량 진단평가 및 교수활동 질 관리
5. 학생역량 진단평가 및 교수활동 질 관리
6. 교육성과(역량) 관리, 교육수요자 만족도 통합 분석 등
7. 데이터 기반 교육전략 수립, 데이터 수집·분석·통합관리

제6조(행정인력) 센터에 행정인력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이화의학교육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의과대학장, 센터장 및 전임교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으로 의과대학장이 임명하는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의과대학장이 된다.

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센터의 직원 및 조직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⑥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.

제8조(사업계획 및 보고)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과대학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9조(경비 및 현금출납) ① 센터의 예산은 자체자원 또는 교비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2. 2. 25. 제정)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